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 - 5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16년 12월 22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제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팻릿(1,100×1,100mm) 또는 T-12형 팻릿(1,200×1,000mm)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pm 2.5\%$ 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pm 10\%$, 너비의 $\pm 10\text{mm}$,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pm 5\text{mm}$,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pm 2\text{mm}$ 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pm 3\text{mm}$ 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pm 5\%$ 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pm 10\%$ 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 제12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 실 류	사과	5kg, 7.5kg, 10kg
	배, 감귤	3kg, 5kg, 7.5kg, 10kg, 15kg
	복숭아, 매실, 단감, 자두, 살구, 모과	3kg, 4kg, 4.5kg, 5kg, 10kg, 15kg
	포 도	3kg, 4kg,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채 소 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 추	5kg, 10kg
	오 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호 박	8kg, 10kg, 10~28개
	단호박	5kg, 8kg, 10kg, 4~11개
	가 지	5kg, 8kg, 10kg, 50개
	토마토	5kg, 7.5kg, 10kg, 15kg
	방울토마토, 피망	5kg, 10kg
	참 외	5kg, 10kg, 15kg, 20kg
	딸 기	8kg
	수 박	5~22kg, 1~5개
	조롱수박	5~6kg, 2~5개
	멜 론	5kg, 8kg, 2~10개
	풋옥수수	8kg, 10kg, 15kg, 20개, 30개, 40개, 50개
	풋완두콩	8kg, 20kg
	풋 콩	15kg, 20kg
	양 파	5kg, 8kg, 10kg, 12kg, 15kg, 20kg
	마 늘	5kg, 10kg, 15kg, 50개, 100개
	깐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대파, 쪽파	5kg, 10kg
무	8~12kg, 18~20kg, 5~12개	
총각무	5kg, 10kg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채 소 류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당 근	10kg, 15kg, 20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결구상추	8kg
	부 추	5kg, 10kg, 20kg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연 근	5kg, 15kg, 20kg
	미나리	5kg, 10kg, 15kg
	고구마순	10kg, 20kg
	쭈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10kg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8kg, 10kg,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신립초	15kg
	갓	5kg, 10kg
	콩나물	6kg, 10kg
	달 래	8kg, 10kg
서 류	감 자	5kg, 8kg,, 10kg, 15kg, 20kg
	고구마	5kg, 8kg, 10kg, 15kg
특 작 류	참 깨, 피땅콩	20kg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들 깨	12kg
	수 삼	10kg, 15kg, 20kg
버 섯 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6kg
	팽이버섯	5kg
	영지버섯	5kg, 10kg
곡 류	쌀, 찰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매, 좁쌀, 울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옥수수쌀	12kg, 20kg

※ 5kg이하 표준거래단위는 별도로 정한 품목 외는 유통현실에 맞게 규정하지 않음.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화 혜 류	국 화	300~800분
	카네이션, 석죽	300~1,000분
	장 미	200~700분
	백 합	200~600분
	글라디올러스, 극락조화	200~300분
	튤립, 아이리스, 리아트리스, 공작초	400~500분
	거베라, 해바라기	300~400분
	프리지아, 스타티스	350~400분
	금어초, 칼라, 리시안사스	300~350분
	안개꽃	1,000~2,000분
	스토크	250~300분
	다알리아	350~450분
	알스트로메리아	150~300분
	안스리움	20~50분
	포인세티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칼랑코예	4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시클라멘	4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별표 2]

농산물용 포장치수(제4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1,300×350 * 화훼류에 한함
2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3	1,025×533
4	930×275
5	825×275
6	554×246
7	545×335
8	530×350
9	520×280
10	510×360
11	500×366
12	450×305
13	440×310
14	430×320
15	423×254
16	420×325
17	415×260
18	400×300
19	391×317
20	366×260
21	350×350
22	350×250
23	330×256
24	300×175
25	220×165

2.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550×300(절입 75mm)
2	650×380(절입 75mm)
3	650×420(절입 75mm)

3.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1,470×700
2	1,010×610
3	950×650
4	900×700
5	860×460
6	850×610
7	850×570
8	850×550
9	830×560
10	800×500
11	800×400
12	770×610
13	770×470
14	770×380
15	750×330
16	720×510
17	720×340
18	700×500
19	690×450
20	670×500
21	670×340
22	650×430
23	650×250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24	640×550
25	640×390
26	600×520
27	600×500
28	600×470
29	600×400
30	600×380
31	590×370
32	570×380
33	570×350
34	560×460
35	550×430
36	530×200
37	520×320
38	510×350
39	510×240
40	470×340
41	470×270
42	470×240
43	450×320
44	400×530
45	400×490
46	400×440
47	400×400
48	400×240
49	400×180
50	300×195
51	290×190
52	250×150
53	240×170
54	235×140
55	230×120
56	210×140

4. 플라스틱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높이mm)
1	1,100×1,100×200
2	1,010×360×240
3	660×440×245
4	560×510×330
5	560×510×230
6	550×366×350
7	550×366×320
8	550×366×245
9	550×366×230
10	550×366×180
11	550×366×155
12	366×275×155

5. 다단식 목재상자 · 금속재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높이mm)
1	1,100×1,100×200

6.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535×340
2	450×310
3	440×310
4	410×340
5	348×250
6	360×260
7	355×258
8	350×264
9	350×240
10	349×249
11	365×250
12	302×232
13	280×220
14	265×203
15	257×190
16	250×195
17	250×190
18	190×140

[별표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2kg미만	2kg이상 10kg미만	10kg이상 15kg미만	15kg이상
골판지 종 류	양면 골판지1종	양면 골판지2종	이중양면 골판지1종	이중양면 골판지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8(상업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34(외부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사과, 배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아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목	포장단량(kg)	압 축 강 도	인쇄도수
배	15	4.6~5.5 kN [470~560 (kgf)]	4도 이내
사과, 배	7.5, 10	4.4~5.4 kN [450~550 (kgf)]	
	5	4.1~5.0 kN [420~510 (kgf)]	

2. P-E대(폴리에틸렌대)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P-E 두께	0.03mm이상	0.05mm이상	0.07mm이상	0.10mm이상

※ P-E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P-P대(직물제 포대)

섬 도 (tex)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N)	직조밀도 (올/5cm)	기 타
100±1	29이상	39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 이내로 접혀진 원사로 제 작한다.

※ P-P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표시 단량별 그물망의 무게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포장재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 상으로 직조한 것

5. 지대

거래단위	10kg미만	10kg이상	20kg이상
평량(80g/m ²)	2~3겹	3겹	4겹 (3겹은 평량 90g/m ²)

※ 지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M 7501(크라프트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81(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 용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6.3의 압축강도는 KS T 1081 「표 2」 ‘압축 하중 종별’에서 4m를 적용한다.

7.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45(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 1) “표준규격품” 문구
- 2) 품목
- 3) 산지

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

4) 품종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품종명을 표시
채소류	멜론, 마늘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화훼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품종명 또는 계통명 생략 가능

5) 등급

6) 무게 또는 개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유자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
채소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꽃옥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무게 또는 개수(포기수)를 표시
화훼류	전품목	개수(본수 또는 분수)를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무게를 표시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하며, 3kg 미만의 내용물(개수) 확인이 가능한 소(속)포장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송이수)만 표시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은 판매자 명칭으로 같음할 수 있다.

나. 권장 표시사항

1) 당도 및 산도표시

가) 당도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품종)과 등급별 당도규격

품목	품 종	등 급	
		특	상
사과	○ 후지, 화홍, 감홍, 홍로	14 이상	12 이상
	○ 홍월, 서광, 홍옥, 쓰가루(착색계)	12 이상	10 이상
	○ 쓰가루(비착색계)	10 이상	8 이상
배	○ 황금, 추황	12 이상	10 이상
	○ 신고(상 10이상), 장십랑	11 이상	9 이상
	○ 만삼길	10 이상	8 이상
복숭아	○ 서미골드, 진미	13 이상	10 이상
	○ 찌요마루, 유명, 장호원황도, 천홍, 천중백도	12 이상	10 이상
	○ 백도, 선광, 수봉, 미백	11 이상	9 이상
	○ 포목, 창방, 대구보, 선프레, 암킹	10 이상	8 이상
포도	○ 델라웨어, 새단, MBA	18 이상	16 이상
	○ 거봉	17 이상	15 이상
	○ 캠벨얼리	14 이상	12 이상
감귤	○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13 이상	12 이상
	○ 온주밀감(시설), 청견, 황금향	12 이상	11 이상
	○ 온주밀감(노지)	11 이상	10 이상
금감	○ 특 - 12°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10°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상 - 11°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9°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단감	○ 서촌조생	14 이상	12 이상
	○ 부유	13 이상	11 이상
	○ 대안단감	12 이상	11 이상
자두	○ 포모사	11 이상	9 이상
	○ 대석조생	10 이상	9 이상
참외		11 이상	9 이상
딸기		11 이상	9 이상
수박		11 이상	9 이상
조롱 수박		12 이상	10 이상
멜론		13 이상	11 이상

※ 당도표시 대상은 등급규격의 특 · 상품에 한하며, 당도를 표시할 경우에는 등급규격에 등급별 당도규격을 포함하여 특 · 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도표시 방법 : 해당 당도를 °Bx 단위로 표시

다만, 비과과 당도 선별기를 이용한 품목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허용오차를 줄 수 있다.

종 류	품 목	허용오차
과실류	사과, 배, 감귤	±0.5°Bx
채소류	수박	±1.0°Bx
	멜론, 참외	±1.5°Bx

다) 감귤류는 당도 이외에 산도를 % 단위로 표시

- 2) 크기(무게, 길이, 지름)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송이수) 표시
- 3)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 4) 영양성분
 - 가) 품목과 성분

품목	영양성분
사과, 배, 감귤, 감자 등 농산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화훼류 제외)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 표시방법

-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을 참고

2. 표시방법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중		무 게	kg	이 름
산 지		(개수)	()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mm, 포장재중량 : 1,200g±5% >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곡류, 서류는「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별표 5]

농산물의 등급규격(제10조 관련)

1. 과실류(1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1011	사 과	별 첨
1021	배	"
1031	복 송 아	"
1041	포 도	"
1051	감 귤	"
1055	금 감	"
1061	매 실	"
1071	단 감	"
1111	자 두	"
1121	참 다 래	"
1131	블루베리	"

2. 채소류(2000~3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2011	마른고추	별 첨
2012	고 추	"
2021	오 이	"
2031	호 박	"
2034	단호박·미니단호박	"
2041	가 지	"
2051	토마토	"
2053	방울토마토	"
2054	송이토마토	"
2061	참 외	"
2071	딸 기	"
2081	수 박	"
2082	조롱수박	"
2091	멜 론	"
2101	피 망·파프리카	"
3011	양 파	"
3021	마 늘	"
3041	무	"
3051	결구배추	"
3061	양배추	"
3071	당 근	"
3081	브로콜리	"

3. 서류(4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4011	감 자	별 첨
4021	고구마	"

4. 특작류(5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5011	참 깨	별 첨
5021	피땅콩	"
5022	알땅콩	"
5031	들 깨	"
5041	수 삼	"

5. 버섯류(6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6011	느타리버섯	별 첨
6013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
6021	양송이버섯	"
6031	팽이버섯	"
6041	영지버섯	"

6. 곡류(7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7011	쌀	별 첨
7012	참 쌀	"
7013	현 미	"
7021	보리쌀	"
7023	눌린보리쌀	"
7024	할 맥	"
7031	좁 쌀	"
7041	울무쌀	"
7051	콩	"
7061	팥	"
7071	녹 두	"
7081	찰수수쌀	"
7091	찰기장쌀	"
7111	메 밀	"
7121	옥수수(팝콘용)	"
7122	옥수수쌀	"

7. 화훼류(8000)

규격번호	품 목(품종·종류)	규격내용
8011	국 화	별 첨
8021	카네이션	"
8031	장 미	"
8041	백 합	"
8051	글라디올러스	"
8061	튜올립	"
8071	거베라	"
8081	아이리스	"
8091	프리지아	"
8111	금어초	"
8121	스타티스	"
8141	칼 라	"
8151	리시안시스	"
8161	안개꽃	"
8191	스토크	"
8221	공작초	"
8231	알스트로메리아	"
8251	포인세티아	"
8261	칼랑코예	"
8271	시클라멘	"

[별표 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제12조 관련)

1. 과실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 50과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날개의 고르기

공시량 전량의 무게 또는 지름을 매 과별로 계측하여 크기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다. 착색비율

1) 공시량 중에서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5과의 착색비율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금감은 공시량 전량에 대하여 등급별 착색비율에 미달하는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3) 날개마다 품종 고유의 색깔에 대비하여 착색 정도별 면적비율과 해당 면적별 착색비율을 각각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 착색비율(\%)} = (A1 \cdot B1 + A2 \cdot B2 + A3 \cdot B3 \dots An \cdot Bn) / 100$$

A1, A2, A3 …… An = 착색정도별 면적비율

B1, B2, B3 …… Bn = 해당면적별 착색비율

라. 당도

1) 대상품목은 과실류 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의 8품목으로 한다.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시량이 50개인 과실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5과,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실은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3과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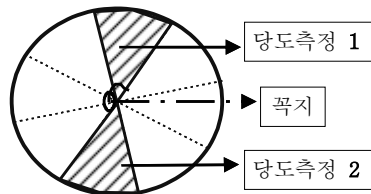
4) 사과, 배는 씨방, 단감은 씨, 감귤은 껍질과 씨, 복숭아, 자두는 핵을 제거한 후 이용한다.

5) 1과의 착즙은 씨방, 핵, 껍질, 씨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금감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포도 : 1 송이의 상·중·하에서 중간 품위의 날알을 각각 5알씩 채취하여 착즙한다.

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자두, 감귤 : 『그림 1』 과 같이 과실의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과 그 반대쪽을 선택한 후 품목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 및 착즙부위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마. 산함량/당산비

1) 시료는 당도 측정에 이용한 과즙을 사용한다.

2) 산함량(산도) 측정은 “KS H 2188(과실·채소쥬스) 6.3 산도의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계에 의한 방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 할 수 있다.

※ 당산비 = 당도(°Bx) ÷ 산함량(%)

바. 결점과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과는 공시량 중에서 매과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중결점, 경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과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text{혼입률 (\%)} = \frac{\text{중결점(경결점) 개수}}{\text{공시 개수}} \times 100$$

3)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2. 채소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개 이상은 50개, 50개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1) 마른고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 및 경결점, 심하게 구부러진 것 등을 제외하고 매개의 길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품목(품종)별 허용길이 또는 무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단, 평균 길이(무게)는 공시량 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의 품목을 제외한 채소류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과를 제외하고 전량의 무게(또는 크기)를 측정하여 무게(또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또는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다. 마른고추의 품질평가

1) 수분 : 고르기 계측용 시료중에서 30g 정도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꼭지를 제거한 후 시료분쇄기로 과피와 씨를 20매쉬(약1mm) 정도로 분쇄 혼합하여 측정한다.

2) 탈락씨 및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탈락씨와 이물을 따로 골라내어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을 구한다.

라. 마늘의 품질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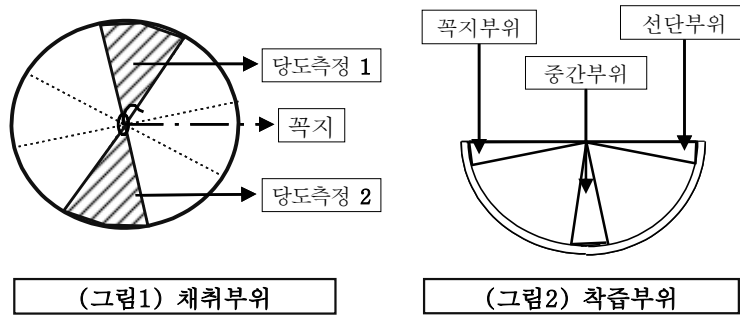
- 1) 열구 : 공시료(50구)중에서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통마늘을 분류하여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 2) 쪽마늘 : 포장단위 전체에서 쪽마늘을 분리한 후 전체 무게에 대한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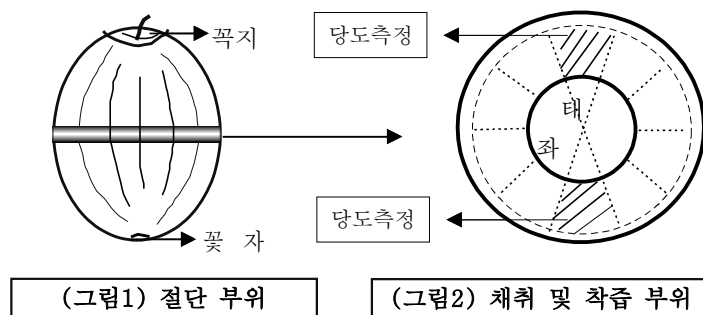
- 1) 대상품목은 과채류 중 수박, 조롱수박, 참외, 멜론, 딸기의 5품목으로 한다.
-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공시량이 50개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5개,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3개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 4) 수박, 조롱수박은 껍질과 씨, 참외는 태좌와 씨, 멜론은 껍질, 태좌, 씨를 제거한 후 이용한다.
- 5) 1개의 착즙은 씨, 껍질, 태좌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딸기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수박, 조롱수박 : 『그림 1』 과 같이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X자(대칭)로 2조각(『그림 1』 참조)을 선택하여 각각 『그림 2』 와 같이 3개 부위를 절단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다) 참외, 멜론 : 꼭지와 꽃자리의 중간부위를 수평으로 『그림 1』 과 같이 2등분하여 각 등분별로 X자(대칭)로 2조각(『그림 2』)을 선택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6) 착즙요령

-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바. 결점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 1) 결점은 매개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전량에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경결점, 중결점으로 분류하

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text{혼입률 (\%)} = \frac{\text{중결점(경결점) 개수}}{\text{공시 개수}} \times 100$$

3. 서류 : 채소류에 준한다.

4. 특작류

가. 고르기(알땅콩)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중량비율을 구한다.

나. 빈 꼬투리, 가벼운 결점,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비율을 구한다.

다. 용적중 : “1L 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브라벨곡립계 등에 의한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브라벨곡립계 계측 시 이물을 제외한 시료를 150g 균분하여 사용한다.

라. 피해립, 이종곡립, 이종피색립 : 용적중을 계측한 시료 중에서 5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수삼 날개의 고르기·결점 혼입률 : 채소류에 준한다.

5. 곡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곡류검사 실시요령」별표 3 “곡종별 품위 검정 순위표”에 준한다. 다만,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을 적용한다.

[별표 7]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제11조의 ②관련)

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적용되며, 포장 단위별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3. 품질(적합) 규격

가. 색깔

-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유지하여야 함
- ② 절단된 농산물을 육안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은 변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엽채류는 핑크색 또는 갈색이 잎의 중앙부(엽맥)까지 확산되지 않아야 함
 - 엽경채류는 육안으로 판정하여 심한 황색 또는 갈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근채류 중 당근은 표면에 백화현상이 심하지 않아야 하고, 무·당근·연근·우엉 등은 절단면에서 갈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 마늘은 녹변 또는 핑크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양파는 색이 검게 나타나지 않고, 파는 황색으로 변하지 않아야 함
 - 감자·고구마는 갈변과 녹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나. 외관

-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② 엽채류 잎에 검은반점 또는 물에 잠긴(수침) 증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③ 엽경채류, 근채류, 버섯류 등이 짓물려 있거나 점액물질이 심하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④ 과채류가 지나치게 물러져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 ⑤ 서류는 지나치게 전분질이 나와 표면에 묻어 있지 않아야 함

다. 이물질

- ① 포장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원료이외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라. 신선도

- ① 표면이 건조되어 마른 증상이 없어야 하며, 부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② 물러지거나 부러짐이 심하지 않아야 함

마. 포장상태

- ① 유통 중 포장재에 핀홀(구멍)이 발생하거나 진공포장의 밀봉이 풀리지 않아야 함

바. 이취

- ① 포장재 개봉 직후 심한 이취가 나지 않아야하며, 이취가 발생하여도 약간만 느끼어 품목 고유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4. 포장규격

- 가.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 나. 포장치수의 길이,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및 40개 모델, 또는 표준팰릿(KS T 0006)의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5kg 미만 소포장 및 속포장 치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표시사항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판매자 명칭으로 같음할 수 있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등급은 생략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 ① 신선편이 농산물이란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 ② 신선편이 농산물에 사용되는 원료 농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 채소류 :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 엽채류 :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치커리, 시금치 등
 - 엽경채류 : 파,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등
 - 근채류 : 무, 양파, 마늘, 당근, 연근, 우엉 등
 - 과채류 :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수박 등
 - ㉡ 서류 : 감자, 고구마
 - ㉢ 버섯류 :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 ③ 변색이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산물 고유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해진 것을 말한다.
- ④ 백화현상(white blush)이란 당근 절단면이 주로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고유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갈변이란 절단 된 신선편이 농산물이 주로 효소작용에 의해 육안으로 판정하여 고유의 색이 아닌 붉은 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 ⑥ 녹변이란 마늘, 감자의 색이 육안으로 판정하여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 ⑦ 검은반점이란 엽채류에서 산소부족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 잎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갈변의 반점이 나타나고 점차 면적이 커지면서 색이 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⑧ 잠긴(수침) 증상이란 신선편이 엽채류의 잎이 더운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⑨ 신선도란 신선편이 가공 직후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없고, 말라서 농산물 중량이 감소하거나 부패된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 ⑩ 마른 증상이란 농산물 수분이 감소되어 당초 보다 부피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 ⑪ 이취란 포장된 농산물을 개봉하였을 때 신선편이 농산물 고유의 냄새가 아닌 알콜취 등의 다른 냄새를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사 과

[규격번호 : 1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사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특」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 ③ 신선도 :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 ③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㉔ 미숙과 : 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㉕ 병충해과 : 탄저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㉖ 생리장해과 : 고두병, 과피 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㉗ 내부갈변과 : 갈변증상이 과육까지 미친 것
 - ㉘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㉙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㉚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㉛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㉜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㉝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㉞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㉟ 꼭지가 빠진 것
 - 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g/개	375 이상	300 이상 375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표 2]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품 종	등 급	특	상	보통
홍옥, 홍로, 화홍, 양광 및 이와 유사한 품종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후지, 조나골드, 세계일, 추광, 서광, 선홍, 새나라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쓰가루(착색계)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0% 이상	10% 이상	-

농산물표준규격
배

[규격번호 : 1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배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③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③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 병해충과 : 붉은별무늬병(적성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병, 심식충류, 매미충류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㉔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㉕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㉖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㉗ 경미한 과피흑점, 얼룩, 녹, 일소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㉘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㉙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㉚ 꼭지가 빠진 것
 - ㉛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g/개	750 이상	600 이상 75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430 이상 500 미만	375 이상 430 미만	333 이상 37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복숭아

[규격번호 : 1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복숭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과숙과 : 경도,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 병충해과 : 복숭아탄저병, 세균성구멍병(천공병),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외관상 씨 쪼개짐이 두드러진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외관상 씨 쪼개짐이 경미한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경미한 일소, 약해, 찰상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1개의 무게(g)	유명, 장호원황도, 천중백도, 서미골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5 이상	300 이상 375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210 이상 250 미만
	백도, 천홍, 사자, 창방, 대구보, 진미, 미백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50 이상	215 이상 250 미만	188 이상 215 미만	150 이상 188 미만
	포목조생, 선광, 수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10 이상	180 이상 21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120 이상 150 미만
	백미조생, 쪼요마루, 선프레, 압킹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80 이상	150 이상 180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2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포도

[규격번호 : 1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포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캠벨얼리, 마스캇베일리에이(MBA),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L」, 「M」인 것
 - 거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섶택 : 품종 고유의 섶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섶택 : 품종고유의 섶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섶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낱알의 형태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부패, 경화, 위축 등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탄저병, 노균병, 축과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피해과 : 일소, 열과, 오염된 것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낱알의 밀착도가 지나치거나 성긴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1 송이의 무게(g)	마스캇베일리에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50 이상	500 이상 650 미만	350 이상 500 미만	350 미만
	거봉, 네오마스캇, 다노 레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500 이상	400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300 미만
	캠벨얼리 및 이와 유사한 품종	450 이상	350 이상 45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00 미만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00 이상	25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00 미만
	델라웨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20 미만	10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감 굴

[규격번호 : 1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적용하지 않음
 -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 「S」 인 것
 -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표 2]에서 정하는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④ 과피 :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⑤ 껍질튼 것(부피과) : 별도로 정하는 껍질 튼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없음(○)”에 해당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5% 이내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 ④ 과피 :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⑤ 껍질튼 것(부피과) : 별도로 정하는 껍질 튼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가벼움(1)” 이상에 해당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 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 ④ 과피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껍질 뜯 것(부피과) :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뜯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중간정도(2)” 이상에 해당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숙기(조생종, 중생종, 만생종)가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 일소과 : 지름 또는 길이 10mm 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 ㉤ 병충해과 : 더듬이병, 궂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꼭지가 퇴색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1(한라봉,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품 종		호 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0 이상	300 이상 370 미만	230 이상 300 미만	150 이상 230 미만	150 미만
	청견, 황금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30 이상	270 이상 330 미만	210 이상 270 미만	150 이상 210 미만	150 미만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25 이상 165 미만	100 이상 125 미만	85 이상 100 미만	70 이상 85 미만	70 미만

[표 1] 크기 구분-2(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구분 \ 호칭	2S	S	M	L	2L
1개의 지름(mm)	49~53	54~58	59~62	63~66	67~70
1개의 무게(g)	53~62	63~82	83~106	107~123	124~135

※ 드럼식 선과기는 지름, 중량식 선과기는 무게를 적용하고, 호칭 숫자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표 2] 품종별/등급별 착색 비율(%)

품종 \ 등급	특	상	보통	
온주밀감	5~10월 출하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1~4월 출하	85 이상	80 이상	70 이상
한라봉, 천혜향, 청견, 황금향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95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림 1] 껍질 뜯 정도

없음(○)	가벼움(1)	중간정도(2)	심함(3)
			
껍질이 뜨지 않은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이하가 뜯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50%가 뜯 것	껍질 내표면적의 50%이상 뜯 것

농산물표준규격
금 감

[규격번호 : 1055]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는 금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선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특”에 미달하는 것이 1% 이하인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선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상”에 미달하는 것이 3% 이하인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5% 이하인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꼭지가 퇴색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표 2] 등급별 착색비율

등 급	특	상	보통
착색비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농산물표준규격
매 실

[규격번호 : 1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매실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인 것
- ③ 속도 : 과육의 속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속도 : 과육의 속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속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속도가 적당하다는 것은 과피가 황변되거나, 과육이 연화되기 이전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검은별무늬병(혹성병), 균핵병, 큰무늬병(반문병), 깍지벌레 등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㉔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㉕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㉑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㉒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㉓ 미숙과 : 성숙이 덜된 것
 - ㉔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㉕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㉖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1개의 지름(mm)	36 이상	33 이상 36 미만	30 이상 33 미만	27 이상 30 미만	27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단 감

[규격번호 : 1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단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섹택 :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 ③ 속도 :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섹택 : 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 ③ 속도 :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섹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속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당도(맛), 경도 및 섹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탄저병, 검은별무늬병, 감꼭지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 ㉥ 꼭지 : 꼭지가 빠지거나, 꼭지 부위가 갈라진 것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그을음병, 깎지벌레 등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꼭지가 돌아갔거나, 꼭지와 과육 사이에 틈이 있는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3S
g/개	300 이상	250 이상 300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150 이상 167 미만	15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자 두

[규격번호 : 1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자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섶택 : 착색비율이 40% 이상인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섶택 : 착색비율이 20% 이상인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섶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미숙과 : 맛, 육질, 섶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검은무늬병, 심식충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찰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오염된 것 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약해, 일소 등 피해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1과의 기준 무게 (g)	대과종 포모사, 솔담, 산타로사, 캔시(피자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중과종 대석조생, 비유티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참다래**

[규격번호 : 1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다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5L」, 「4L」, 「3L」, 「2L」, 「L」인 것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 ④ 향미 :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 ⑤ 털 : 털의 탈락이 없는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5L」, 「4L」, 「3L」, 「2L」, 「L」, 「M」, 「S」, 「2S」인 것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 ④ 향미 :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 ⑤ 털 :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⑦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섹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향미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털 :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 ⑥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육질, 경도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 병충해과 : 연부병, 각지벌레, 풍뎅이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 시든 것, 기타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녹물에 오염된 것, 이물이 붙어 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5L	4L	3L	2L	L	M	S	2S	3S	4S
g/개	144 이상	125 이상 144 미만	112 이상 125 미만	101 이상 112 미만	92 이상 101 미만	84 이상 92 미만	78 이상 84 미만	72 이상 78 미만	65 이상 72 미만	6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블루베리

[규격번호 : 11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하이부시 블루베리와 배벗아이 블루베리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속도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속도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낱알의 형태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다듬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미숙과 : 당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미이라병, 노린재 등 병충해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 피해과 : 일소, 열과, 오염된 것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 ㉞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한다.
 - ㉟ 과속과 : 경도, 섹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㊱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 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과실 횡경 기준, mm)

2L	L	M	S
17이상	14이상 17미만	11이상 14미만	11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마른고추

[규격번호 : 2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붉은 마른고추를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1.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0% 이하인 것
- ⑥ 탈락씨 : 0.5% 이하인 것
- ⑦ 이물 : 0.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1.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양호한 것
-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15.0% 이하인 것
- ⑥ 탈락씨 : 1.0% 이하인 것
- ⑦ 이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 하는 것
- ② 색택 : 특·상에 미달 하는 것
-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④ 중결점과 : 3.0% 이하인 것
- ⑤ 경결점과 : 25.0% 이하인 것
- ⑥ 탈락씨 : 2.0% 이하인 것
- ⑦ 이물 : 2.0% 이내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이상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이상인 것
 - ㉡ 박피(薄皮) : 미숙으로 과피(껍질)가 얇고 주름이 심한 것

- ㉔ 상해과 : 잘라진 것 또는 길이의 1/2 이상이 갈라진 것
 - ㉕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피해가 과면의 10% 이상인 것
 - ㉖ 기타 : 심하게 오염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㉗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미만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미만인 것(꼭지 또는 끝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 ㉘ 상해과 : 길이의 1/2 미만이 갈라진 것
 - ㉙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피해가 과면의 10% 미만인 것
 - ㉚ 모양 : 심하게 구부러진 것, 꼭지가 빠진 것
 - ㉛ 기타 :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 ③ 탈락씨 : 떨어져 나온 고추씨를 말한다.
- ④ 이물 : 고추 외의 것(떨어진 꼭지 포함)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고 추

[규격번호 : 201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물고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파리고추는 20% 이하)
- ② 길이(파리고추에 적용) : 4.0~7.0cm인 것이 80% 이상
- ③ 선택
 - 풋고추, 파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파리고추는 50% 이하)로 혼합된 것
- ② 선택
 - 풋고추, 파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있는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 ③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양호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길이 : 꼭지를 제외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현저한 것
 - ㉢ 기타 : 오염이 심한 것, 씨가 검게 변색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과숙과 : 붉은색인 것(풋고추, 파리고추에 적용)
 - ㉡ 미숙과 :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녹색과(홍고추에 적용)
 - ㉢ 상해과 : 꼭지 빠진 것, 잘라진 것, 갈라진 것
 - ㉣ 발육이 덜 된 것
 - ㉤ 기형과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표준규격
오 이

[규격번호 : 2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오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다다기계는 $\pm 1.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처음과 끝의 굽기가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1.5cm 이내, 가시계는 2.0cm 이내인 것
- ④ 신선도 :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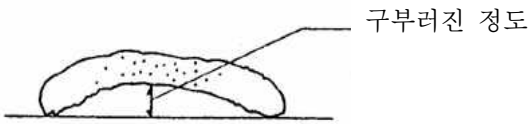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0\text{cm}$ (다다기계는 $\pm 1.5\text{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처음과 끝의 굽기가 대체로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다다기·취청계는 3.0cm 이내, 가시계는 4.0cm 이내인 것
- ④ 신선도 :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색택 : 특·상에 미달한 것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과숙과 : 선택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 상해과 : 절상, 자상,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병충해과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
- ㉤ 공동과 : 과실 내부에 공극이 있는 것
- ㉥ 모양 : 열과, 기형과 등 모양이 불량한 것
- ㉦ 기타 : 오염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농산물표준규격
호 박

[규격번호 : 2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호박(애호박, 풋호박, 주키니)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① 날개의 고르기

- 주키니 : 평균 길이에서 ±2.5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애호박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풋호박 : 평균 무게에서 ±50g을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④ 모양

- 주키니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없는 것
- 풋호박 : 구형 또는 난형(卵形)으로 모양이 균일한 것

⑤ 신선도 :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⑦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① 날개의 고르기

- 주키니 : 평균 길이에서 ±2.5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애호박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풋호박 : 평균 무게에서 ±50g을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④ 모양

- 주키니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 애호박 : 처음과 끝의 굽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상인 것이 20% 이내인 것
- 풋호박 : 구형 또는 난형(卵形)으로 모양이 대체로 균일한 것

⑤ 신선도 : 꼭지와 표피가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⑦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섹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품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쥬키니 : 페포계 쥬키니 및 이와 유사한 품종을 말한다.
 - ㉡ 애호박 : 동양계 품종으로 장과형 및 이와 유사한 청과용을 말한다.
 - ㉢ 풋호박 : 동양계 품종으로 구형·난형(卵形) 및 이와 유사한 청과용을 말한다.
- ②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③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 과숙과 : 색깔 또는 무늬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무름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자상, 압상, 찰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기타 : 기형과, 오염과 등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④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 종		호 칭			
		2L	L	M	S
쥬키니	1개의 길이 (cm)	30 이상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0 미만
애호박		24 이상	20 이상 24 미만	16 이상 20 미만	12 이상 16 미만
풋호박	1개의 무게 (g)	500 이상	400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30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단호박·미니단호박

[규격번호 : 2034]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단호박과 미니단호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미니단호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모양·색택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색택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2L	L	M	S	2S
단호박	1개의 무게 (kg)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
미니 단호박		0.6 이상	0.5 이상 0.6 미만	0.4 이상 0.5 미만	0.3 이상 0.4 미만	0.3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가 지

[규격번호 : 2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가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선택 : 품종 고유의 흑자색으로 광택이 뛰어난 것
- ③ 모양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2.0cm 이내인 것
- ④ 신선도 : 표면에 주름이 없고 싱싱하며, 탄력이 있는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pm 2.5\text{cm}$ 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선택 : 품종 고유의 흑자색으로 광택이 양호한 것
- ③ 모양 : 처음과 끝의 굽기가 거의 비슷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4.0cm 이내인 것
- ④ 신선도 : 표면에 주름이 없고 싱싱하며, 탄력이 있는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부패·변질된 것을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구부러진 정도 : 다음 그림과 같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변질된 것
 - ㉢ 과숙과 : 색깔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갈색무늬병 등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기타 : 기형과, 색택불량과, 오염과 등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 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표면의 일부에 그친 경미한 갈색반점이 있는 것

농산물표준규격
토마토

[규격번호 : 2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 「S」인 것
- ③ 선택 : 출하 시기별로 [표 2]의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한 것
- ④ 신선도 : 꺾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
- ⑤ 꽃자리 흔적 :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출하 시기별로 [표 2]의 착색기준에 맞고, 착색 상태가 균일한 것
- ④ 신선도 : 꺾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양호한 것
- ⑤ 꽃자리 흔적 : 두드러지지 않은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꽃자리 흔적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색깔 또는 육질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 병충해과 : 배꼽썩음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상해과 : 생리장해로 육질이 섬유질화한 것. 열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형상불량과 : 품종의 특성이 아닌 타원과, 선첨과(先尖果), 난형과(亂形果), 공동과(空洞果) 등 기형과 및 열과(裂果)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형상 불량 정도가 경미한 것
 - ㉡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기타 결점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3L	2L	L	M	S	2S
1과의 무게(g)	일반계	300 이상	250 이상 300 미만	210 이상 250 미만	180 이상 210 미만	150 이상 18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중소형계 (흑토마토)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 미만
	소형계 (캄파리)	-	50 이상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20 미만

[표 2] 착색 기준

출하시기	착 색 비 율	
	완숙 토마토	일반 토마토
3월 ~ 5월	전체 면적의 60% 내외	전체 면적의 20% 내외
6월 ~ 10월	전체 면적의 50% 내외	전체 면적의 10% 내외
11월~익년 2월	전체 면적의 70% 내외	전체 면적의 30% 내외

농산물표준규격
방울토마토

[규격번호 : 205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방울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뛰어나며 균일한 것
- ④ 신선도 :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것
- ⑤ 숙도 :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 「S」인 것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양호하며 균일한 것
- ④ 신선도 : 과피의 탄력이 양호한 것
- ⑤ 숙도 :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 ⑥ 중결점과 : 없는 것
- ⑦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숙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㉔ 과숙과 : 선택 또는 육질의 경도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지나친 것
- ㉕ 미숙과 : 성숙이 덜된 것
- ㉖ 병충해과 : 과피 또는 과육에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㉗ 상해과 : 생리장해로 육질이 섬유질화한 것. 열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㉘ 형상불량과 : 기형과 및 열과(裂果)
- ㉙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㉑ 형상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것
 - ㉒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㉓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㉔ 기타 결점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과의 무게(g)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1과의 지름(mm)	35 이상	25 이상 35 미만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송이토마토

[규격번호 : 2054]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송이토마토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② 모양 : 송이당 4개 이상의 날알이 달린 것
- ③ 색택 : 착색비율이 70% 이상인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이 뛰어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② 모양 : 송이당 4개 이상의 날알이 달린 것
- ③ 색택 : 착색비율이 70% 이상인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탄력이 양호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3. 보통

- ①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②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정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㉔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㉕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㉑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㉒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㉓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50 이상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3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참 외

[규격번호 : 2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섹택 : 착색비율이 90% 이상인 것
- ③ 신선도, 숙도 :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없고 신선도가 뛰어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섹택 :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 ③ 신선도, 숙도 :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신선도, 속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착색비율은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성숙이 지나치거나 과육이 연화된 것
 - ㉣ 미숙과 : 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탄저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불량한 것
-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3L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g)	715 이상	500 이상 715 미만	375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375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214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딸 기

[규격번호 : 2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딸기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당도, 경도, 선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 이상	17 이상 25 미만	12 이상 17 미만	12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수 박

[규격번호 : 2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선택 : 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② 신선도 :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하고, 과피가 단단하고
짧게 절단하는 것을 권장) 신선한 것(꼭지는
- ③ 숙도 : 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선택 : 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양호한 것
- ② 신선도 :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하고, 과피가 단단하고
짧게 절단하는 것을 권장) 신선한 것(꼭지는
- ③ 숙도 : 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3. 보통

- ①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숙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성숙이 지나치거나 과육이 연화된 것
 - ㉢ 미숙과 : 타공음, 무늬의 선명도 등으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덜된 것
 - ㉣ 병충해 : 역병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 : 열상, 자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형상불량 : 기형구, 공동구(속이 빈 것), 선택불량 등 그 결점의 정도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 ③ '씨없는 수박'이란 껍질이 단단하며, 성숙한 배(胚)를 가진 것으로 수박을 4등분(꼭지부위에서 세로로 한번, 중간부위에서 가로로 한번)으로 자른 단면에 보이는 씨가 7개 이하인 것을 말한다(단, 미숙한 하얀색 종피 종자는 제외)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4L	3L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 (kg)	11.0 이상	10.0 이상 11.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 미만

※ 호칭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농산물표준규격
조롱수박

[규격번호 : 208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조롱수박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속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미숙과 : 경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2.5 이상	1.7 이상 2.5 미만	1.3 이상 1.7 미만	1.3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멜론

[규격번호 : 2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멜론에 적용하고,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L」, 「M」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뚜렷하고 균일한 것
- ④ 신선도, 숙도 :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숙도 :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속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과육의 연화 등 성숙이 지나친 것
 - ㉣ 미숙과 : 과육의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 병충해과 : 탄저병, 딱정벌레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종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네트계	2.6 이상	2.0 이상 2.6 미만	1.6 이상 2.0 미만	1.6 미만
	백피계 황피계	2.2 이상	1.8 이상 2.2 미만	1.3 이상 1.8 미만	1.3 미만
	파파야계	1.0 이상	0.75 이상 1.0 미만	0.60 이상 0.75 미만	0.6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피망·파프리카

[규격번호 : 210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피망과 파프리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② 무게

- 피망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L」인 것
- 파프리카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2]에서 「L」,「M」,「S」인 것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꺾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뛰어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꺾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양호한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 병충해과 : 흑색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피망)

구분 \ 호칭	L	M	S
1개의 무게(g)	10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표 2] 크기 구분(파프리카)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40 이상	180 이상 240 미만	140 이상 180 미만	110 이상 140 미만	11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양 파

[규격번호 : 3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파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 ④ 색택 :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 ⑤ 손질 : 흙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
- ⑥ 중결점구 : 없는 것
- ⑦ 경결점구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 ④ 색택 :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 ⑤ 손질 : 흙 등 이물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구 : 없는 것
- ⑦ 경결점구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구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구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구 : 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구 : 자상, 압상이 육질에 미친 것, 심하게 오염된 것
 - ㉣ 형상 불량구 : 쌍구, 열구, 이형구, 싹이 난 것, 추대된 것
 - ㉤ 기타 : 경결점구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구의 지름 (cm)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마 늘

[규격번호 : 3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마늘(통마늘, 풋마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2L」, 「L」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④ 손질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한 것
-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20% 이하인 것
- ⑥ 쪽마늘 : 4% 이하인 것
- ⑦ 중결점구 : 없는 것
- ⑧ 경결점구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2L」, 「L」, 「M」인 것
-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대체로 충실하고 고른 것
- ④ 손질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꽃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한 것
-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30% 이하인 것
- ⑥ 쪽마늘 : 10% 이하인 것
- ⑦ 중결점구 : 없는 것
- ⑧ 경결점구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손질 : 통마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한 것
 꽃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한 것
-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쪽마늘 : 15% 이하인 것
- ⑦ 중결점구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 ⑧ 경결점구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마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통마늘 : 적당히 건조되어 저장용으로 출하되는 마늘
 - ㉡ 꽃마늘 : 수확후 신선한 상태로 출하되는 마늘(4~6월중에 출하되는 것에 한함)
- ②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포장단위 전체 마늘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단,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 ③ 쪽마늘 : 포장단위별로 전체 마늘 중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을 말한다.
- ④ 중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구 : 병충해의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 ㉡ 부패, 변질구 : 육질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형상불량구 : 기형 및 별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성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 상해구 :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 ⑤ 경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마늘쪽이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1/4 이상 떨어져 나간 것
 - ㉡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 ㉢ 뿌리 턱이 빠진 것

㉔ 기타 중결점구에 속하지 않는 결점이 있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지름 (cm)	한지형	5.0 이상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난지형	5.5 이상	4.5 이상 5.5 미만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4.0 미만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무

[규격번호 : 3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무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모양 :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 ③ 신선도 :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④ 잎 길이 : 저장 무는 3.0cm 이하(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모양 :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 ③ 신선도 :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④ 잎 길이 : 저장 무는 3.0cm 이하(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잎 길이 : 저장 무는 3.0cm 이하(김장용은 적용하지 아니 함)
- ⑤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형상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추대된 것

- ㉔ 기타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무게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kg)	3.0 이상	2.0 이상	1.5 이상	1.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결구배추

[규격번호 : 3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결구배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⑥ 중결점 : 없는 것

⑦ 경결점 : 없는 것

3.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결구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다듬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변질 : 배추잎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개열된 것, 추대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 (kg)	일반배추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고랭지배추	3.0이상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 일반배추는 봄·가을배추, 월동배추를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양배추

[규격번호 : 3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배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인 것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없는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결구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다듬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양배추잎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개별된 것, 추대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1개의 무게(kg)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당 근

[규격번호 : 3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당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뛰어난 것
- ③ 모양 :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 ④ 손질 : 앞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선택 : 품종 고유의 선택이 양호한 것
- ③ 모양 :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 ④ 손질 : 앞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 ⑤ 중결점 : 없는 것
- ⑥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선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손질 : 앞은 1.0cm 이하로 자른 것
- ⑤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형상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녹변이 심한 것

- ㉔ 기타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㉑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㉒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㉓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규격번호 : 3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인 것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화구가 황화 되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화구 줄기 7cm 이하에 나머지 부위는 깨끗하게 다듬은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결구 :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화구가 황화 되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 ⑤ 다듬기 : 화구 줄기 7cm 이하에 나머지 부위는 깨끗하게 다듬은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없는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결구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화구의 황화 정도가 전체 면적의 5% 이하인 것
- ⑤ 다듬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10%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부패·변질 : 화구와 줄기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화구의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화구 1개의 무게(g)	330 이상	330 미만	270 미만	20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감 자

[규격번호 : 4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3L」, 「2L」, 「L」인 것(조림용 제외)
- ③ 손질 : 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 ④ 중결점 : 없는 것
- ⑤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3L」, 「2L」, 「L」, 「M」, 「S」인 것(조림용 제외)
- ③ 손질 : 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 ④ 중결점 : 없는 것
- ⑤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 : 감자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둘레썩음병, 겹둥근무늬병, 더덩이병, 굽벙이 등의 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 ㉣ 상해 : 열상, 자상 등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하거나 상처 부위가 아문 것은 제외한다.
 - ㉤ 기형 : 2차 생장 등 그 형상 불량 정도가 현저한 것
 - ㉥ 싹이난 것, 광선에 의해 녹변된 것 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종		호칭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 (g)	수미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80 이상	220 이상 280 미만	160 이상 220 미만	100 이상 16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40 미만	
	대지 및 이와 유사한 품종	500 이상	400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40 이상 200 미만	40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고구마

[규격번호 : 4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고구마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 「S」인 것
- ③ 손질 :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 ④ 중결점 : 없는 것
- ⑤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 「S」인 것
- ③ 손질 :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 ④ 중결점 : 없는 것
- ⑤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손질 : 흙, 줄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
- ④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⑤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 : 품종이 다른 것
 - ㉡ 부패, 변질 : 고구마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병충해 : 검은무늬병, 검은점박이병, 근부병, 굽병이 등의 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 ㉣ 자상, 찰상 등 상처가 심한 것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㉔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개의 무게(g)	250 이상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 호칭과 병행하여 장폭비(길이÷두께)가 3.0이하인 것이 80%이상은 “등근형”, 3.1이상인 것이 80% 이상은 “긴형”의 형태를 표기할 수 있다.

농산물표준규격
참 개

[규격번호 : 5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깨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600 이상인 것
- ④ 이중피색립 : 1.0% 이하인 것
- ⑤ 이물 : 1.0% 이하인 것
- ⑥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참깨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580 이상인 것
- ④ 이중피색립 : 2.0% 이하인 것
- ⑤ 이물 : 2.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550 이상인 것
- ④ 이중피색립 : 5.0% 이하인 것
- ⑤ 이물 : 5.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1L의 무게를 말한다.
- ③ 이중피색립 : 껍질의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참깨를 말한다.
- ④ 이물 :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피땅콩

[규격번호 : 5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피땅콩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빈 꼬투리 : 3.0% 이하인 것
- ④ 피해 꼬투리 : 3.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5% 이하인 것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으로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빈 꼬투리 : 5.0% 이하인 것
- ④ 피해 꼬투리 : 5.0% 이하인 것
- ⑤ 이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빈 꼬투리 : 10.0% 이하인 것
- ④ 피해 꼬투리 : 10.0% 이하인 것
- ⑤ 이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빈 꼬투리 : 수정불량 등으로 알땅콩이 정상 발육되지 않은 것
- ③ 피해꼬투리 : 병해충, 부패, 변질, 파손 등 알땅콩에 영향을 현저하게 미친 것
- ④ 이물 : 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알땅콩

[규격번호 : 5022]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알땅콩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낱알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L」인 것이 95% 이상인 것
- ② 모양 : 낱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하며 껍질 벗겨진 것이 5.0% 이하인 것
- ③ 수분 : 9.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3.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1% 이하인 것

2. 상

- ① 낱알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L」,「M」인 것이 90% 이상인 것
- ② 모양 : 낱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하며 껍질 벗겨진 것이 10.0% 이하인 것
- ③ 수분 : 9.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낱알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수분 : 9.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10.0% 이하인 것
- ⑤ 이물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부패·변질립, 병충해립, 발아립, 미숙립, 깨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③ 이물 : 알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1립의 무게(g)	0.7 이상	0.4 이상 0.7 미만	0.4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들 깨

[규격번호 : 503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들깨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낱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50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0.5%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2.0% 이하인 것
- ⑦ 이물 : 0.5% 이하인 것
- ⑧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들깨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낱알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충실한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47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5.0% 이하인 것
- ⑦ 이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44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2.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5%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10.0% 이하인 것
- ⑦ 이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1L의 무게를 말한다.

- ③ 피해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들깨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중곡립 : 들깨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⑤ 이중피색립 : 껍질의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들깨를 말한다.
- ⑥ 이물 : 들깨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수삼

[규격번호 : 5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재배·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4년근 이상의 수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무게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인 것
-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 ⑧ 중결점 : 없는 것
- ⑨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5%이하인 것
- ② 무게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L」, 「M」인 것
-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 ⑧ 중결점 : 없는 것
- ⑨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육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⑦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⑧ 중결점 : 10%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⑨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중결점은 은피삼, 주름삼, 결빙된 삼, 눈(牙)이 완전히 개열된 삼, 상해, 충해, 적변삼, 균열삼 등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 ㉠ 상해·충해 : 피해 정도가 몸통면적의 5% 이하인 것
 - ㉡ 적변삼 : 표피가 몸통면적의 5% 이하로 붉게 변한 것
 - ㉢ 균열삼 : 균열의 길이가 1cm 이하인 것
 - ㉣ 난발삼 : 몸통이 거의 없고 뿌리가 수평으로 발달한 것(“상”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개체(1뿌리)당 무게(g)	94 이상	68 이상 94 미만	50 이상 68 미만	50 미만
750g당 뿌리수	8 이하	9~11	12~15	16 이상

농산물표준규격
느타리버섯

[규격번호 : 601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① 날개의 고르기

-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② 갓의 크기

- 상재배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M」인 것
- 병재배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M」, 「S」인 것
- 애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S」인 것

③ 갓의 모양 : 품종의 고유 형태와 색깔로 윤기가 있는 것

④ 신선도 : 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⑤ 이물 : 없는 것

⑥ 중결점 : 없는 것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① 날개의 고르기

-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40% 이하인 것

② 갓의 크기

- 상재배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병재배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M」, 「S」인 것
- 애느타리버섯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M」, 「S」인 것

③ 갓의 모양 : 품종의 고유 형태와 색깔로 윤기가 있는 것

④ 신선도 : 신선하고 탄력이 있는 것으로 갈변현상이 없고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⑤ 이물 : 없는 것

⑥ 중결점 : 없는 것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갓의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갓의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이물 : 없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율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③ 이물 : 느타리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④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곰팡이, 달팽이, 버섯파리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 ㉡ 상해 : 갓 또는 자루의 손상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버섯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⑤ 경결점은 병충해,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갓의 지름(cm)	6 이상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1 이상 2 미만

※ 갓의 지름 : 갓의 최대지름을 말한다.(균생 버섯의 경우 가장 큰 갓의 최대지름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규격번호 : 601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L」, 「M」인 것
- ③ 모양 : 갓은 우산형으로 개열되지 않고, 자루는 굽고 곧은 것
- ④ 색깔 :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 ⑤ 신선도 :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 ⑥ 피해품 : 5% 이하인 것
- ⑦ 이물 : 없는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의 「L」, 「M」, 「S」인 것
- ③ 모양 : 갓은 우산형으로 개열이 심하지 않으며, 자루가 대체로 굽고 곧은 것
- ④ 색깔 :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 ⑤ 신선도 :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양호한 것
- ⑥ 피해품 : 10% 이하인 것
- ⑦ 이물 : 없는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 ③ 갓의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갓의 색깔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피해품 : 20% 이하인 것
- ⑦ 이물 : 없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② 피해품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 병충해품 : 곰팡이, 달팽이, 버섯파리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상해품 : 갓 또는 자루가 손상된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기형품 : 갓 또는 자루가 심하게 변형된 것

㉣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③ 이물 : 새송이버섯 이외의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1개의 무게(g)	90 이상	45 이상 90 미만	20 이상 45 미만

농산물표준규격
양송이버섯

[규격번호 : 6021]

I.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송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다만,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갓의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L」인 것
- ③ 갓의 모양 : 버섯 갓과 자루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택이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버섯 갓이 찢이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자루길이 : 1.0cm 이하로 절단된 것
- ⑥ 이물 : 없는 것
- ⑦ 중결점 : 없는 것
- ⑧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다만,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② 갓의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③ 갓의 모양 : 버섯 갓과 자루사이의 피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육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색택이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버섯 갓이 퍼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⑤ 자루길이 : 2.0cm 이하로 절단된 것
- ⑥ 이물 : 없는 것
- ⑦ 중결점 : 없는 것
- ⑧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갓의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갓의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자루길이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이물 : 없는 것
- ⑦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⑧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② 자루길이 : 피막과 자루가 접합된 지점부터 절단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③ 이물 : 양송이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④ 결점 혼입율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⑤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갈색무늬병, 곰팡이 또는 세균성 무늬병, 버섯모기, 진드기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
 - ㉡ 자상, 찰상 등의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버섯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⑥ 경결점은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갓의 지름(cm)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 갓의 지름 : 갓의 최대지름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팽이버섯

[규격번호 : 6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팽이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갓의 모양 : 갓이 퍼지지 않은 것
- ② 갓의 크기 : 갓의 최대 지름이 1.0cm 이상인 것이 5개 이내인 것(150g 기준)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④ 신선도 : 육질의 탄력이 있으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 ⑤ 이물 : 없는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갓의 모양 : 갓이 퍼지지 않은 것
- ② 갓의 크기 : 갓의 최대 지름이 1.0cm 이상인 것이 20개 이내인 것(150g 기준)
-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④ 신선도 : 육질의 탄력이 있으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것
- ⑤ 이물 : 없는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갓의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갓의 크기 : 적용하지 않음
-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이물 : 없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이물 : 팽이버섯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착된 배지는 제외한다.
- ② 결점 혼입율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 세균, 곰팡이, 버섯파리 등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한 것

- ㉠ 갓 또는 자루의 손상 정도가 현저한 것
- ㉡ 기형 : 갓 모양의 변형이 현저한 것
- ㉢ 부패·변질된 것, 기타 피해 정도가 현저한 것
- ④ 경결점과는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영지버섯

[규격번호 : 6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건조한 상태로 유통되는 원형 및 절편 영지버섯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날개의 고르기
 - 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절편 : 절편길이가 9.0cm 이상인 것이 40% 이상이고, 5.0cm 이하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갓의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추고 조직이 단단한 것
- ③ 절편의 넓이 : 2~8mm인 것
- ④ 갓의 크기(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⑤ 갓의 두께 : 1.0cm 이상인 것
- ⑥ 자루길이 : 2.0cm 이하인 것
- ⑦ 수분 : 13.0% 이하인 것
- ⑧ 이물 : 없는 것
- ⑨ 중결점 : 없는 것
- ⑩ 경결점 : 없는 것

2. 상

① 날개의 고르기

- 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절편 : 절편길이가 7.0cm 이상인 것이 40% 이상이고, 5.0cm 이하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갓의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추고 조직이 단단한 것
- ③ 절편의 넓이 : 2~8mm인 것
- ④ 갓의 크기(원형)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M」인 것
- ⑤ 갓의 두께 : 0.7cm 이상인 것
- ⑥ 자루길이 : 3.0cm 이하인 것
- ⑦ 수분 : 13.0% 이하인 것
- ⑧ 이물 : 없는 것
- ⑨ 중결점 : 없는 것
- ⑩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날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갓의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절편의 넓이 : 2~8mm인 것
- ④ 갓의 크기(원형) : 적용하지 않음
- ⑤ 갓의 두께 : 적용하지 않음
- ⑥ 자루길이 : 3.0cm 이하인 것
- ⑦ 수분 : 13.0% 이하
- ⑧ 이물 : 없는 것
- ⑨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 ⑩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날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② 절편의 넓이 : 가장 넓은 곳의 크기 말한다.
- ③ 갓의 크기 : 갓의 가장 넓은 직경을 말한다.
- ④ 갓의 두께 : 정상적인 버섯 10개의 평균 두께를 말한다.
- ⑤ 자루길이 : 갓의 하단 부위에서 자루 절단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⑥ 이물 : 영지버섯 외의 것을 말한다.
- ⑦ 결점 혼입율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버섯 중 결점이 있는 버섯의 무게비율을 말한다.
- ⑧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병충해, 부패·변질 등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
 - ㉡ 갓의 변형 정도가 심한 것
 - ㉢ 기타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
- ⑨ 경결점은 병충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L	M	S
갓의 지름 (cm)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 갓의 지름 : 갓의 최대지름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쌀

[규격번호 : 7011]

쌀의 표준규격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쌀 등급 기준'(첨부 참조)에 따르되,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멍쌀에 적용하며, 가공용·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산물표준규격
잡 쌀

[규격번호 : 701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잡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되고 낱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④ 멍쌀혼입 : 3.0%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3.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⑧ 기타이물 : 0.1% 이하인 것
- ⑨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잡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되고 낱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④ 멍쌀혼입 : 8.0%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7.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2.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⑧ 기타이물 : 0.3%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④ 멍쌀혼입 : 15.0%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20.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6.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5% 이하인 것
- ⑧ 기타이물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멍쌀혼입 : 찹쌀 속에 포함된 멍쌀을 말한다.
- ④ 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 위에 남는 것 중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발아립, 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낱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 1/4이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된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⑦ 기타이물 : 찹쌀 이외의 것과 1.7mm 그물체로 쳐서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돌, 광물질의 고형물은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이어야 한다.

농산물표준규격
현 미

[규격번호 : 701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찰현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굽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용적중(g/L) : 810 이상인 것
- ③ 정립 : 85.0% 이상인 것
- ④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⑤ 사미 : 3.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⑧ 메현미 혼입 : 3.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 ⑨ 돌 : 없는 것
- ⑩ 낱, 이중곡립(1.5kg중) : 없는 것
- ⑪ 이물 : 0.0% 이하인 것
- ⑫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현미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굽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용적중(g/L) : 800 이상인 것
- ③ 정립 : 75.0% 이상인 것
- ④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⑤ 사미 : 6.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7.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⑧ 메현미 혼입 : 8.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 ⑨ 돌 : 없는 것
- ⑩ 낱, 이중곡립(1.5kg중) : 없는 것
- ⑪ 이물 : 0.3%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용적중(g/L 중량) : 780 이상인 것
- ③ 정립 : 70.0% 이상인 것
- ④ 수분 : 16.0% 이하인 것
- ⑤ 사미 : 10.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10.0% 이하인 것
- ⑦ 열손립 : 0.3% 이하인 것
- ⑧ 메현미 혼입 : 15.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 ⑨ 돌 : 없는 것
- ⑩ 낱, 이중곡립(1.5kg중) : 3개 이하인 것
- ⑪ 이물 : 0.5%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1L의 무게를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사미, 열손립, 미숙립, 낱, 이중곡립 및 이물을 제외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사미 : 충실하지 아니한 분상질립(청사미 및 백사미)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발아립, 병해립, 충해립, 부패립, 기형립, 사미, 싸라기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현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현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⑧ 이중곡립 : 현미 1.5kg중 낱, 현미 이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⑨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곡립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보리쌀

[규격번호 : 7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보리쌀(겉보리쌀, 찰보리쌀, 쌀보리쌀, 찰쌀보리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메보리쌀 혼입 : 5.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찰쌀보리쌀에 적용)
- ⑤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⑥ 싸라기
 - 겉보리쌀, 찰보리쌀 : 4.0% 이하인 것
 - 쌀보리쌀, 찰쌀보리쌀 : 2.0% 이하인 것
- ⑦ 돌(1.5kg중) : 없는 것
- ⑧ 이물 : 0.0% 이하인 것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메보리쌀 혼입 : 10.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찰쌀보리쌀에 적용)
- ⑤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⑥ 싸라기
 - 겉보리쌀, 찰보리쌀 : 8.0% 이하인 것
 - 쌀보리쌀, 찰쌀보리쌀 : 4.0% 이하인 것
- ⑦ 돌(1.5kg중) : 없는 것
- ⑧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메보리쌀 혼입 : 20.0% 이하인 것(찰보리쌀, 찰쌀보리쌀에 적용)
- ⑤ 열손립 : 0.2% 이하인 것
- ⑥ 싸라기
 - 겉보리쌀, 찰보리쌀 : 15.0% 이하인 것

- 찰보리쌀, 찰찰보리쌀 : 10.0% 이하인 것

- ⑦ 돌(1.5kg중) : 없는 것
- ⑧ 이물 : 0.4%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메보리쌀 혼입 : 찰보리쌀 속에 포함된 메보리쌀을 말한다.
- ③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⑤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⑥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곡립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눌린보리쌀

[규격번호 : 7023]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눌린보리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보리쌀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압편도가 양호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5.0% 이하인 것
- ⑥ 돌(1.5kg중) : 없는 것
- ⑦ 이물 : 0.0% 이하인 것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보리쌀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압편도가 양호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10.0% 이하인 것
- ⑥ 돌(1.5kg중) : 없는 것
- ⑦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2% 이하인 것
- ⑤ 싸라기 : 15.0% 이하인 것
- ⑥ 돌(1.5kg중) : 없는 것
- ⑦ 이물 : 0.4%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압편도 : 낱알의 모양(낱알 표면의 평평함과 미끄러운 정도, 섶택, 갈라진 정도)과 눌린 정도를 말한다.
- ③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⑤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⑥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곡립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할 맥

[규격번호 : 7024]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할맥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을 완전히 제거된 보리쌀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절단 상태가 양호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⑤ 큰싸라기 : 20.0% 이하인 것
- ⑥ 작은싸라기 : 2.0% 이하인 것
- ⑦ 통보리쌀 : 10.0% 이하인 것
- ⑧ 돌(1.5kg중) : 없는 것
- ⑨ 이물 : 0.0% 이하인 것

2. 상

- ① 모양 : 강층을 완전히 제거된 보리쌀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절단 상태가 양호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⑤ 큰싸라기 : 25.0% 이하인 것
- ⑥ 작은싸라기 : 4.0% 이하인 것
- ⑦ 통보리쌀 : 15.0% 이하인 것
- ⑧ 돌(1.5kg중) : 없는 것
- ⑨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열손립 : 0.2% 이하인 것
- ⑤ 큰싸라기 : 35.0% 이하인 것
- ⑥ 작은싸라기 : 6.0% 이하인 것
- ⑦ 통보리쌀 : 20.0% 이하인 것
- ⑧ 돌(1.5kg중) : 없는 것

⑨ 이물 : 0.4%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것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③ 큰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④ 작은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그물체를 통과하고 1.40 mm 그물 체위에 남은 낱알을 말한다.
- ⑤ 통보리쌀 : 낱알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보리쌀 형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 ⑥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그물체 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⑦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그물체 위에 남은 할매 및 통보리쌀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좁 쌀

[규격번호 : 7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차·메좁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0% 이하인 것
- ⑥ 메좁쌀 혼입 : 5.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 ⑦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⑧ 조 : 0.3% 이하인 것
- ⑨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좁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10.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3% 이하인 것

- ⑥ 메좁쌀 혼입 : 10.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 ⑦ 이중곡립 : 0.3% 이하인 것
- ⑧ 조 : 0.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15.0% 이하인 것
- ⑤ 이물 : 0.5% 이하인 것
- ⑥ 메좁쌀 혼입 : 15.0% 이하인 것(차좁쌀에 적용)
- ⑦ 이중곡립 : 0.5% 이하인 것
- ⑧ 조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오염된립,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 ③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850 μ m(0.85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곡립 이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④ 메좁쌀 혼입 : 차좁쌀 속에 포함된 메좁쌀을 말한다.
- ⑤ 조 : 도정되지 않은 조곡상태인 것을 말한다.
- ⑥ 이중곡립 : 좁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울무쌀

[규격번호 : 7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울무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3.0% 이하인 것
- ④ 정립 : 75.0% 이상인 것
- ⑤ 열손립 : 0.0%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0.2% 이하인 것
- ⑦ 피울무(1.5kg중) : 3립 이하인 것
- ⑧ 이중곡립 : 0.0% 이하인 것
- ⑨ 돌 : 없는 것
- ⑩ 이물 : 0.3% 이하인 것
- ⑪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울무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3.0% 이하인 것
- ④ 정립 : 65.0% 이상인 것
- ⑤ 열손립 : 0.1%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0.5% 이하인 것
- ⑦ 피울무(1.5kg중) : 5립 이하인 것
- ⑧ 이중곡립 : 0.3% 이하인 것
- ⑨ 돌 : 없는 것
- ⑩ 이물 : 0.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3.0% 이하인 것
- ④ 정립 : 55.0% 이상인 것

- ⑤ 열손립 : 0.2% 이하인 것
- ⑥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⑦ 피울무(1.5kg중) : 10립 이하인 것
- ⑧ 이중곡립 : 0.5% 이하인 것
- ⑨ 돌 : 없는 것
- ⑩ 이물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정립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울무쌀로서 그 길이가 완전한 낱알의 3/4이상인 것
- ③ 열손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울무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반점립, 흑점립, 생리장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울무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피울무 : 울무의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것
- ⑥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⑦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울무껍질, 풀씨 등 울무쌀 이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콩

[규격번호 : 7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콩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발아율 :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 ④ 낱알의 굵기 : 「소립중」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 ⑤ 정립 : 95.0% 이상인 것
- ⑥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⑦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⑧ 이종피색립 : 0.0% 이하인 것
- ⑨ 이물 : 0.0% 이하인 것
- ⑩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콩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발아율 :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 ④ 낱알의 굵기 : 「중·소립중」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 ⑤ 정립 : 85.0% 이상인 것
- ⑥ 피해립 : 15.0% 이하인 것
- ⑦ 이종곡립 : 0.1% 이하인 것
- ⑧ 이종피색립 : 0.2% 이하인 것
- ⑨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발아율 : 85% 이상인 것(콩나물콩에 적용)
- ④ 낱알의 굵기 : 적용하지 않음
- ⑤ 정립 : 75.0% 이상인 것
- ⑥ 피해립 : 25.0% 이하인 것
- ⑦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⑧ 이종피색립 : 0.5% 이하인 것

⑨ 이물 : 0.5%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정립 :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과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콩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종곡립 : 콩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⑤ 이종피색립 : 다른 색의 콩을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외의 것을 말한다.
- ⑦ 낱알의 굵기 : 낱알의 굵기 구분은 다음과 같이 KS A 5101-2(금속 판 체)의 해당 호칭의 등근 눈의 체로 쳐서 구분하되, 해당 무게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mm인 체를 통과하고 6.30mm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mm인 체를 통과하고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농산물표준규격
팔

[규격번호 : 7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95.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0.0% 이하인 것
- ⑦ 이물 : 0.0% 이하인 것
- ⑧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팔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년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85.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15.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1%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0.2% 이하인 것
- ⑦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75.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25.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⑥ 이종피색립 : 0.5% 이하인 것
- ⑦ 이물 : 0.5%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정립 :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파쇄립 등과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팔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중곡립 : 팔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⑤ 이중피색립 : 다른 색의 팔을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녹 두

[규격번호 : 7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녹두에 적용하고,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95.0% 이상인 것
- ④ 발아율 :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 ⑤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1% 이하인 것
- ⑦ 이종피색립 : 0.0% 이하인 것
- ⑧ 이물 : 0.0% 이하인 것
- ⑨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녹두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85.0% 이상인 것
- ④ 발아율 :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 ⑤ 피해립 : 15.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⑦ 이종피색립 : 0.2% 이하인 것
- ⑧ 이물 : 0.2%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75.0% 이상인 것
- ④ 발아율 : 85% 이상인 것(나물용에만 적용)
- ⑤ 피해립 : 25.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5% 이하인 것
- ⑦ 이종피색립 : 0.5% 이하인 것
- ⑧ 이물 : 0.5%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정립 :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질립, 변색립, 과쇄립, 부패립 등과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녹두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이종곡립 : 녹두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⑤ 이종피색립 : 다른색의 녹두를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찰수수쌀

[규격번호 : 7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찰수수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의 제거 정도가 적당하고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⑥ 메수수쌀 혼입 : 5.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5.0% 이하인 것
- ⑧ 이물 : 0.0% 이하인 것
- ⑨ 돌(1.0kg중) : 없는 것
- ⑩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찰수수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의 제거 정도가 적당하고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2.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2% 이하인 것
- ⑥ 메수수쌀 혼입 : 10.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10.0% 이하인 것
- ⑧ 이물 : 0.3% 이하인 것
- ⑨ 돌(1.0kg중) : 없는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3.0% 이하인 것
- ⑤ 이종곡립 : 0.4% 이하인 것
- ⑥ 메수수쌀 혼입 : 15.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15.0% 이하인 것
- ⑧ 이물 : 0.5% 이하인 것
- ⑨ 돌(1.0kg중) : 없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오염된 낱알, 착색립,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흑점립, 생리장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수수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③ 이종곡립 : 수수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④ 메수수쌀 혼입 : 찰수수쌀 중 메수수쌀을 말한다.
- ⑤ 싸라기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⑥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것 중 곡립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⑦ 돌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돌, 콘크리트조각 또는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찰기장쌀

[규격번호 : 7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찰기장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3.0% 이하인 것
- ⑤ 이중곡립 : 0.0% 이하인 것
- ⑥ 메기장쌀 혼입 : 5.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5.0% 이하인 것
- ⑧ 기장 : 0.0% 이하인 것
- ⑨ 이물 : 0.0% 이하인 것
- ⑩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찰기장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5.0% 이하인 것
- ⑤ 이중곡립 : 0.3% 이하인 것
- ⑥ 메기장쌀 혼입 : 10.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10.0% 이하인 것
- ⑧ 기장 : 0.5% 이하인 것
- ⑨ 이물 : 0.3%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④ 피해립 : 10.0% 이하인 것
- ⑤ 이중곡립 : 0.5% 이하인 것
- ⑥ 메기장쌀 혼입 : 15.0% 이하인 것

- ⑦ 싸라기 : 20.0% 이하인 것
- ⑧ 기장 : 1.0% 이하인 것
- ⑨ 이물 : 0.5%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기장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③ 이종곡립 : 기장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④ 메기장쌀 혼입 : 찰기장쌀 중 메기장쌀을 말한다.
- ⑤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850 μ m(0.85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⑥ 기장 : 도정되지 아니한 기장을 말한다.
- ⑦ 이물 : KS A 5101-1(금속 망 체) 중 호칭치수 850 μ m(0.85mm)의 금속 망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곡립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메 밀

[규격번호 : 7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60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10.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1% 이하인 것
- ⑦ 이물 : 0.5% 이하인 것
- ⑧ 조건 : 생산년도가 다른 메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56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2.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20.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⑦ 이물 : 1.0% 이하인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용적중(g/L) : 50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3.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25.0% 이하인 것
- ⑥ 이종곡립 : 0.5% 이하인 것
- ⑦ 이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별표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1L의 무게를 말한다.
- ③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메밀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미숙립 : 성숙되지 않은 낱알을 말한다.
- ⑤ 이종곡립 : 메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옥수수(팝콘용)

[규격번호 : 7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팝콘용옥수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굵기가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95.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2.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2.0% 이하인 것
- ⑥ 이중곡립 : 0.5% 이하인 것
- ⑦ 이물 : 0.0% 이하인 것
- ⑧ 돌(500g중) : 없는 것
- ⑨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팝콘용 옥수수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굵기가 고른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90.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4.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4.0% 이하인 것
- ⑥ 이중곡립 : 1.0% 이하인 것
- ⑦ 이물 : 0.1% 이하인 것
- ⑧ 돌(500g중) : 없는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수분 : 14.0% 이하인 것
- ③ 정립 : 80.0% 이상인 것
- ④ 피해립 : 10.0% 이하인 것
- ⑤ 미숙립 : 6.0% 이하인 것
- ⑥ 이중곡립 : 2.0% 이하인 것
- ⑦ 이물 : 0.3% 이하인 것

⑧ 돌(500g중) : 없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미숙립 : 성숙되지 않은 낱알을 말한다.
- ⑤ 이종곡립 : 옥수수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 ⑦ 돌 : 돌, 콘크리트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옥수수쌀

[규격번호 : 7122]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메·찰옥수수쌀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정립 : 90.0% 이상인 것
- ⑤ 피해립 : 0.1% 이하인 것
- ⑥ 파쇄립 : 10.0% 이하인 것
- ⑦ 메옥수수쌀혼입 : 10.0% 이하인 것(찰옥수수쌀에만 적용)
- ⑧ 이종곡립 : 0.0% 이하인 것
- ⑨ 이물 : 0.1% 이하인 것
- ⑩ 돌(500g중) : 없는 것
- ⑪ 조건 : 생산년도가 다른 옥수수쌀이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 ① 모양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정립 : 85.0% 이상인 것
- ⑤ 피해립 : 0.5% 이하인 것
- ⑥ 파쇄립 : 15.0% 이하인 것
- ⑦ 메옥수수수쌀혼입 : 20.0% 이하인 것(찰옥수수수쌀에만 적용)
- ⑧ 이종곡립 : 0.3% 이하인 것
- ⑨ 이물 : 0.3% 이하인 것
- ⑩ 돌(500g중) : 없는 것

3. 보통

-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냄새 : 곰팡이 및 묵은 냄새가 없는 것
- ③ 수분 : 15.0% 이하인 것
- ④ 정립 : 80.0% 이상인 것
- ⑤ 피해립 : 1.0% 이하인 것
- ⑥ 파쇄립 : 20.0% 이하인 것
- ⑦ 메옥수수수쌀혼입 : 25.0% 이하인 것(찰옥수수수쌀에만 적용)
- ⑧ 이종곡립 : 0.5% 이하인 것
- ⑨ 이물 : 0.5% 이하인 것
- ⑩ 돌(500g중) : 없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옥수수수쌀 : 옥수수를 도정한 것으로 파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정립 : KS A 5101-2(금속 판 체) 중 4.0mm 둥근 눈의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옥수수수쌀로서 그 크기가 완전한 낱알의 3/4이상인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오염된 낱알,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변질립, 미숙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수수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파쇄립 : KS A 5101-2(금속 판 체) 중 4.0mm 둥근 눈의 체로 쳐서 체위에 남은 옥수수수쌀로서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⑥ 메옥수수수쌀혼입 : 찰옥수수수쌀에 포함된 메옥수수수쌀을 말한다.
- ⑦ 이종곡립 : 옥수수수쌀 외의 곡립을 말한다.
- ⑧ 이물 : KS A 5101-2(금속 판 체) 중 4.0mm의 둥근 눈의 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과 기타 곡립 이외의 것을 말한다.
- ⑨ 돌 : 돌, 콘크리트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을 말한다.

농산물표준규격
국 화

[규격번호 : 80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국화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2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2/3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5~6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기형화, 노심현상, 버들눈, 관생화 등이 있는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본)
		1묶음 평균의 꽃대길이(cm)	스탠다드	80이상	70이상 80미만
스프레이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5또는10

농산물표준규격
카네이션

[규격번호 : 80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카네이션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4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1~2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2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생리장해 : 약할, 관생화, 수곡, 변색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형상불량, 파손, 굵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호 칭	1급	2급	3급	1목음의 본수 (분)
		1목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스탠다드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스프레이	60이상		50이상 60미만	30이상 5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장 미

[규격번호 : 80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장미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1/5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1~2개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2/5정도 개화된 것
 - 스프레이 : 꽃봉오리가 3~4개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

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생리장해 : 꽃목굽음, 기형화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형상불량, 파손, 굵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스탠다드	80이상	70이상 80미만	20이상 70미만
스프레이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5또는10	

농산물표준규격
백 합

[규격번호 : 80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백함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나며 크기가 균일 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상태에서 화색이 보이고 균일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가 1/3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하며 크기가 균일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블라스팅, 엽소, 블라인드, 기형화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1급	2급	3급	1등급의 본수 (분)
1등급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5또는10

농산물표준규격
글라디올러스

[규격번호 : 80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글라디올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2~3개의 화색이 보이는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3~4개의 화색이 보이는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있는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수곡현상, 잎끝마름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화수의 끝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100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10
꽃의 수	14이상	11이상 14미만	11미만	

농산물표준규격
튤립

[규격번호 : 80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튤립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상태에서 화색이 보이는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가 1/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50이상	40이상 50미만	20이상 4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거베라

[규격번호 : 80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거베라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4/5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 ⑧ 조건 : 꽃봉오리에 캡을 씌우고 줄기 18cm까지 테이핑한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완전히 개화된 것
- ⑤ 손질 :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 ⑧ 조건 : 꽃봉오리에 캡을 씌우고 줄기 18cm까지 테이핑한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잎에 자상, 압상, 동상, 열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관생화, 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통상화의 모양이 찌그러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 70미만	40이상 6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아이리스

[규격번호 : 808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아이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가 1/3 정도 올라온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가 1/2 정도 올라온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60이상	50이상 60미만	30이상 5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프리지아

[규격번호 : 8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프리지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아래 부분의 소화가 화색이 보이는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꽃봉오리 아래 부분의 소화가 1~2개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꽃뿔현상, 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꽃대가 절화 길이의 10% 이상 휘어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류음의 분수 (분)
1류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50이상	40이상 50미만	20이상 40미만	10또는20

농산물표준규격
금어초

[규격번호 : 811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금어초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 소화중 1/3 정도 개화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 소화중 1/2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수곡현상, 꽃뿔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화수의 끝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 80미만	40이상 7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스타티스

[규격번호 : 81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스타티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 소화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 소화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1급	2급	3급	1등급의분수 (분)
1등급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칼 라

[규격번호 : 814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칼라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백색 : 꽃봉오리가 1/3 정도 개화된 것
 - 유색 : 꽃봉오리가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백색 : 꽃봉오리가 2/3 정도 개화된 것
 - 유색 : 꽃봉오리가 완전히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화포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겹피기현상, 녹화현상, 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줄기를 세웠을 때 90°이상 휘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 80미만	40이상 70미만	5(유색) 10(백색)

농산물표준규격
리시안사스

[규격번호 : 81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리시안사스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각 측지의 1번화가 1/2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각 측지의 1번화가 완전히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피해가 심한 것
 - ㉤ 형상불량, 파손, 굽힘, 개화 차이가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등급의 본수 (본)
1등급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안 개 꽃

[규격번호 : 81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안개꽃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60이상	50이상 60미만	30이상 50미만	20~50

농산물표준규격
스토크

[규격번호 : 81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스토크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소화 중 1/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소화 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화 : 품종이 다른 것

- ㉠ 상처 : 꽃봉오리 혹은 꽃잎, 잎에 탈리,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심한 것
 -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생리장해 : 양분결핍증, 경할현상, 일소 등의 피해가 심한 것
 - ㉣ 줄기가 심하게 휘어진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현저하게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경미한 약해, 생리장해, 상처, 농약살포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손질 정도가 미비한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70이상	60이상 70미만	30이상 60미만	5 또는 10

농산물표준규격
공작초

[규격번호 : 822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공작초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굵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꽃봉오리 중 1/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전체의 꽃봉오리 중 2/3 정도 개화된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 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 80미만	30이상 70미만	10

농산물표준규격
알스트로메리아

[규격번호 : 823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알스트로메리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뛰어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지 않으며 굽기가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하계(5월~10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1/3 정도인 것
 - 동계(11월~익년 4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2/3 정도인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3% 이하인 것

2.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색택이 선명하고 양호한 것
- ③ 줄기 : 세력이 강하고, 휘어진 정도가 약하며 굽기가 비교적 일정한 것
- ④ 개화정도
 - 하계(5월~10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1/3 정도인 것
 - 동계(11~4월) : 꽃봉오리중 가장 빠른 것의 개화가 2/3 정도인 것
- ⑤ 손질 : 마른 잎이나 이물질 제거가 비교적 양호한 것
- ⑥ 중결점 : 없는 것
- ⑦ 경결점 : 5% 이하인 것

3. 보통

- ① 크기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줄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중결점 : 5% 이하인 것
- ⑦ 경결점 : 1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크기의 고르기는 매 포장 단위마다 상단·중단·하단에서 각각 3묶음씩 총 9묶음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② 결점 혼입률은 포장 단위별로 전체 본에 대한 결점본의 개수비율을 말한다.
- ③ 중결점 : 약해, 일소, 상처,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경결점 : 피해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 칭	1급	2급	3급	1묶음의 본수 (본)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cm)	80이상	70이상 80미만	50이상 70미만	5또는10

농산물표준규격
포인세티아

[규격번호 : 825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포인세티아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고 신선한 것
- ② 잎 : 잎의 색상이 선명한 것
- ③ 개화정도 : 꽃가루가 터지지 않은 상태의 것
- ④ 착색정도 : 포엽과 착색엽이 완전히 착색된 것
- ⑤ 볼륨감 : 잎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30장 내외인 것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6 ± 0.2 , 치우침 없음

2. 상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 ② 잎 : 잎의 색상의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 ③ 개화정도 : 꽃가루가 조금 터진 상태의 것
- ④ 착색정도 : 포엽과 착색엽이 완전히 착색되지 않는 것
- ⑤ 볼륨감 : 잎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25장 내외인 것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6 ± 0.2 초과, 치우침 없음

3. 보통

- ① 기본품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잎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착색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볼륨감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균형미(초폭/초장)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포엽 : 하나의 꽃 또는 꽃차례를 안고 있는 소형의 잎
- ② 착색엽 : 잎과 포엽 사이에 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일부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
- ③ 초장 : 지체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의까지의 높이
- ④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한 것
- ⑤ 균형미 : 분과 조화롭고, 균형잡힌 구조/꽃의 높이 차이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
- ⑥ 시든 꽃이 없고 꽃가루 등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칼랑코에

[규격번호 : 826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칼랑코에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선명한 것
- ③ 잎 :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 ④ 개화정도 :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고 30~50% 개화된 것
- ⑤ 분지수/꽃대수 : 7개/15대 이상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5 ± 0.2 , 치우침 없음

2. 상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조금 떨어지는 것
- ③ 잎 : 잎의 색상, 무늬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 ④ 개화정도 :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는 정도는 약간 다르며 50~80% 개화 된 것, 또는 30% 미만으로 개화된 것
- ⑤ 분지수/꽃대수 : 5~7개/10~15대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5 ± 0.2 초과, 치우침 없음

3. 보통

- ① 기본품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잎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분지수/꽃대수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균형미(초폭/초장)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분지수 : 한 줄기에서 분지되어 개화 가능한 가지
- ② 꽃대수 : 분지된 가지에서 나온 전체 꽃대의 수
- ③ 초장 : 지체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까지의 높이
- ④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 한 것
- ⑤ 균형미 : 분과 조화롭고, 균형잡힌 구조/꽃의 높이 차이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

농산물표준규격
시클라멘

[규격번호 : 827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시클라멘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1. 특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며 화분의 흙이 보이지 않고, 병충해 및 상처가 없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선명한 것
- ③ 잎 :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 ④ 개화정도 :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고 8개 이상 개화된 것(전체 10~13개)
- ⑤ 기형화 : 전체꽃의 15% 이하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6 ± 0.2 , 치우침 없음

2. 상

- ① 기본품질 : 잎이 풍성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약간 보이며 병충해 흔적 등 상처가 경미하게 있는 것
- ② 꽃 : 품종 고유의 색상으로 화색이 조금 떨어지는 것
- ③ 잎 : 잎의 색상, 무늬가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 ④ 개화정도 : 꽃대가 균일하게 올라오는 정도는 약가 다르며 4~6개 개화 된 것(전체 6~8개)
- ⑤ 기형화 : 전체꽃의 15~30% 이하
- ⑥ 균형미(초폭/초장) : 1.6 ± 0.2 초과, 치우침 없음

3. 보통

- ① 기본품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② 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③ 잎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④ 개화정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⑤ 기형화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⑥ 균형미(초폭/초장)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 ① 대륜 : 꽃잎의 길이가 4.5cm 이상인 것
- ② 소륜 : 꽃잎의 길이가 4.5cm 이하인 것
- ③ 기형화 : 꽃잎이 수평으로 피어 있는 비율이 25%이상인 것
- ④ 초장 : 지체부로부터 식물체 선단부까지의 높이

⑤ 초폭 : 식물의 가로폭으로 넓은 쪽을 측정한 것

< 최소기준 >

- ① 잎이나 꽃, 화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꽃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충해에 의한 꽃대 손상이 없어야 한다.
- ④ 운반상자 및 포장재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수송기간 중 물리적 상처 및 수분손실이 없어야 한다.

쌀 등급 기준

등급 \ 항목	최 고 한 도 (%)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특	16.0	3.0	2.0	1.0	0.0	0.1
상		7.0	6.0	2.0	0.0	0.3
보통		20.0	10.0	4.0	0.1	0.6
<p>※ 기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특'은 3립 이하, '상'은 7립 이하여야 함 ○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쇳가루' 등 고형물은 시료 1kg을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여야 하며, '이종곡립(누 포함)'은 '특'과 '상'은 2개 이하, '보통'은 5개 이하여야 함 ○ 완전립 비율이 9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 표시와는 별도로 포장에 '완전미 (Head Rice)'로 표시를 할 수 있음. 						
<p>[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싸라기 :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mm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낱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말한다. ○ 분상질립 :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을 말한다. ○ 피해립 : 오염된립, 병해립·충해립·발아립·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낱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열손립 : 열 등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의 1/4 이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 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 이종곡립)과 KS A 5101-1 (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mm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이종곡립 : 쌀 이외의 곡립(누 포함) ○ 완전립 : 쌀의 외관특성상 완전한 낱알 또는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낱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낱알 15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함 						